

「지역매체 특별 심사 및 관리 세칙」

2021. 05. 14. 제정

제1조(목적)

이 세칙은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양질의 지역 기사를 생산하는 지역매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'네이버·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' 제5조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“지역매체”란 '네이버·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'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 제5조 제1항 제휴대상 중 신문사업자, 정기간행물사업자, 방송사업자, 인터넷신문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,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을 보급 지역이나 보급대상으로 하거나, 방송권역으로 하는 매체를 말한다.

제3조(권역 구분)

“지역매체”의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경기·인천 :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
- ② 강원 : 강원도
- ③ 세종·충북 :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
- ④ 대전·충남 :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
- ⑤ 대구·경북 :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
- ⑥ 부산·울산·경남 :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
- ⑦ 전북 : 전라북도
- ⑧ 광주·전남 :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

⑨ 제주 : 제주특별자치도

제4조(특별심사 원칙)

- ① 특별심사는 별도의 공고 기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접수 및 심사한다
- ② 특별심사는 제3조 권역별로 뉴스콘텐츠제휴 일(1)개 매체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'뉴스제휴평가위'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뉴스콘텐츠 제휴입점이 취소된 매체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권역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접수는 제3조에 따른 권역을 기준, 심사신청일 기점으로 해당 매체의 보급범위(방송의 경우 허가증,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경우 등록증)에 따라 분류한다. 단, 매체는 2개 이상 권역을 신청할 수 없다.

제5조(신청 및 요건)

① 특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"지역매체"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(가) 제3조에 따른 특정 권역의 지역 기사를 생산하는 매체

(나) "규정" 제4조 (가)호에 따른 뉴스검색제휴 이상 제휴 중인 매체

(다) "규정" <별표 1> '전체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'에서 규정한 매체 유형별 최소 '자체기사 생산 비율'을 유지하는 매체

(라) 매체 유형별 최소 '자체기사 생산 비율'의 80% 이상이 해당 지역 기사인 매체로 지역 자체 기사 구분은 세칙<별표1>과 <별표2>에 따른다.

(마) "규정" 제6조 (다)호에 따라 전송 안전성 등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한 매체

② 특별심사를 신청하려는 매체는 같은 시기 진행되는 정례심사와 특별심사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제6조(평가 절차 및 방법)

- ① 특별심사 절차는 “규정” <별표 2> 제휴평가 절차에 따른다. 다만, 평가위원의 구성에 관하여 ‘뉴스제휴평가위’는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14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.
- ② 특별심사 평가는 “규정”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정량평가(20%) 및 정성평가(80%)를 시행한다. 다만, 정량평가 중 ‘자체기사량’ 항목의 <자체기사비율>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 (라)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추가로 심사한다.
- ③ 정량평가지 매체 유형별 최소 ‘자체기사 생산 비율’ 중 지역 자체 기사 80%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별심사 신청은 무효로 처리한다.
- ④ 제1소위는 평가 및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권역별로 제휴신청 언론사 중 가장 점수가 높은 1개 매체를 최종으로 결정해 양 포털에 뉴스콘텐츠 제휴 입점을 권고한다.

제7조(모니터링)

- ① ‘뉴스제휴평가위’는 세칙 제5조 제1항 (다)호 및 (라)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“규정” 제13조에 따라 모니터링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은 재평가 주기에 따른다.
- ③ 특별심사를 통해 입점한 매체사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발견되면 제1소위는 이를 검증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양 포털사에 해당 매체의 뉴스콘텐츠 계약해지를 권고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뉴스콘텐츠제휴가 취소된 매체는 취소된 일로부터 일(1)년간 뉴스콘텐츠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세칙은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

이 세칙 이전에 뉴스콘텐츠 제휴 신청시 탈락한 “지역매체”에 대하여도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용한다.

제3조(기제휴 지역매체 관한 특례)

- ① 이 세칙 이전에 제휴된 “지역매체”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매체는 제7조(모니터링) 대상에서 제외한다.

<별표1> 신청 권역 및 해당 지역 기사 범위

| 신청 권역 | 해당 지역 기사 범위 |
|----------|-------------|
| 인천.경기 | 인천경기 |
| 강원 | 강원 |
| 세종.충북 | 충청 |
| 대전.충남 | |
| 전북 | 전라 |
| 광주.전남 | |
| 대구.경북 | 경상 |
| 부산.울산.경남 | |
| 제주 | 제주 |

<별표2> 지역 자체기사의 정의

네이버.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<별표 5>의 '자체 기사 세부 정의'를 충족한 기사로서, 다음 기준에 따른 기사를 지역 자체 기사로 간주한다.

- 해당 지역 관련 인물, 사건, 기관 등에 관한 기사
- 해당 지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, 사건에 대한 지역민의 반응 또는 비평 및 분석 기사
- 해당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사설/칼럼 등 의견 기사
- 전국적 사안에 대한 지역민의 여론을 다룬 기사